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1148호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I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 【붙임 1】

가. 합격인원 : 244명 (필기시험 239, 실기시험 5)
(항공조종분야)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선	비고
계			128	1,310	244		
공개 경쟁	소 계		86	1,027	172		
	소 방	남	82	937	164	354.21	조정점수 적용
		여	4	90	8	381.06	조정점수 적용
경력 경쟁	소 계		42	283	72		
	구 조		12	42	10	60.00	
	구 급	남	20	118	41	61.67	
		여	6	111	13	83.33	
	건 축		2	6	3	60.00	
	항 공 조 종		2	6	5	-	실기시험

나. 필기시험 성적 열람 (불합격자에 한함)

○ 기 간 : 2018. 4. 24.(화) 10:00 ~ 27.(금) 18:00

○ 방 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후 개인별 확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전화 문의 불가

※ 항공조종분야 실기시험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II 체력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정 : 2018. 5. 2.(수) ~ 3.(목)

나. 등록시간 : 시험 당일 08:00 ~ 08:40 ※ 08:40 이후 출입문 폐쇄

○ 시간 내 미입장시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증명사진(3cm×4cm 1매) 등

라. 장 소 :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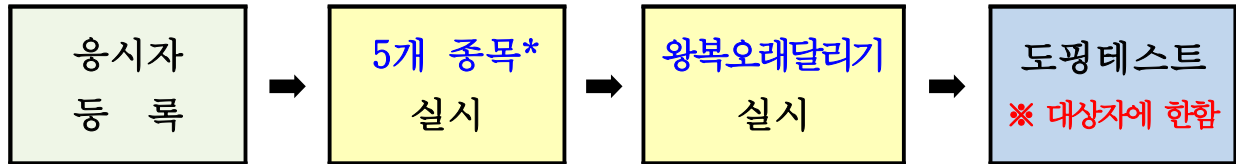
마. 대 상 : 244명

○ 응시분야별 시행일자

일 자	구 분		응시번호	인 원	비 고
5. 2.(수) (1일차)	소 방	남	10010002 ~ 10011064	125	125명
5. 3.(목) (2일차)	소 방	남	10011077 ~ 10011269	39	119명
		여	10020049 ~ 10020145	8	
	항 공	남	31210001 ~ 31210006	5	
	구 조	남	30110002 ~ 30110082	10	
	구 급	남	30210003 ~ 30210180	41	
		여	30220003 ~ 30220169	13	
	건 축	남	30510001 ~ 30510007	3	

※ 시험일자는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음.

바. 세부진행계획 ※ **중식시간 없음**



* 5개 종목 : 악력,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Ⅲ 체력시험 실시방법

가.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 7】**

나. 측정방법 ※ **【붙임 4】**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다.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18. 5. 9.(수)

○ 체력시험 합격자는 부산광역시(<http://www.busan.go.kr>) 홈페이지(시험정보) 및 부산소방안전본부(<http://119.busan.go.kr>)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정보)에 게시합니다.

○ **법무** 분야의 경우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다음 단계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도핑테스트 안내

가. 도핑테스트 실시 ※ **【붙임 5】**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당일 실시 예정

나. 실시대상 : 당일 응시예정인원 중 **7%**(소수점 절사) 무작위 선정(추첨)

V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필기구** 및 **증명사진**(1매)을 지참하고 체력측정에 필요한 간소복과 운동화 등을 착용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반드시 입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도핑테스트 동의서**와 **체력시험 채점표** (사진포함) 작성하여 등록
- 나. 등록시간 내 입실 완료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마.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우천 시에도 본 계획대로 실시됩니다.
- 바.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장갑 착용·개인소지용 파우더 사용은 일체 불허**하며(파우더 제공) 징 또는 스테드가 있는 신발(스파이크 등)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사.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아. 체력시험은 **5종목**(악력·배근력·제자리멀리뛰기·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윗몸일으키기)을 먼저 실시한 후 **중식 시간 없이** “왕복오래달리기”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시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의 정지·무효 및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 및 중도포기자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도 도핑 테스트에 응해야 하며, 무단이탈 또는 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760-3018)

- 【붙임】
1.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명단
 2. 체력시험 장소 안내문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소 방 [남] : 164명 [1/2]

10010002	10010010	10010012	10010016	10010018
10010022	10010024	10010044	10010046	10010065
10010078	10010082	10010088	10010096	10010100
10010106	10010112	10010115	10010123	10010124
10010128	10010133	10010140	10010155	10010156
10010186	10010188	10010194	10010202	10010204
10010225	10010226	10010234	10010236	10010240
10010256	10010263	10010264	10010306	10010320
10010326	10010345	10010351	10010352	10010360
10010362	10010368	10010373	10010402	10010409
10010412	10010423	10010425	10010432	10010451
10010463	10010469	10010470	10010494	10010511
10010518	10010523	10010536	10010556	10010565
10010570	10010572	10010595	10010610	10010616
10010618	10010633	10010635	10010642	10010647
10010656	10010658	10010659	10010663	10010683

■ 소 방(남) : 164명[2/2]

10010696	10010698	10010711	10010712	10010718
10010720	10010723	10010737	10010739	10010751
10010755	10010770	10010772	10010794	10010799
10010801	10010806	10010823	10010854	10010856
10010870	10010871	10010874	10010875	10010876
10010888	10010897	10010903	10010904	10010919
10010927	10010935	10010949	10010964	10010965
10010984	10010989	10011002	10011009	10011020
10011030	10011036	10011038	10011054	10011064
10011077	10011097	10011098	10011107	10011110
10011111	10011123	10011124	10011126	10011128
10011134	10011135	10011137	10011142	10011146
10011147	10011149	10011151	10011156	10011159
10011166	10011175	10011181	10011183	10011191
10011192	10011202	10011206	10011211	10011213
10011221	10011224	10011225	10011228	10011246
10011247	10011256	10011264	10011269	

■ 소 방(여) : 8명

10020049	10020055	10020081	10020084	10020085
10020124	10020131	10020145		

■ 구 조 : 10명

30110002	30110012	30110021	30110022	30110025
30110032	30110034	30110044	30110066	30110082

■ 구 급(남) : 41명

30210003	30210004	30210005	30210009	30210021
30210027	30210029	30210031	30210032	30210033
30210034	30210039	30210042	30210044	30210046
30210047	30210050	30210056	30210062	30210068
30210074	30210078	30210079	30210094	30210097
30210100	30210105	30210106	30210107	30210111
30210115	30210122	30210134	30210141	30210144
30210154	30210166	30210170	30210171	30210176
30210180				

■ 구 급(여) : 13명

30220003	30220039	30220040	30220057	30220061
30220109	30220125	30220138	30220150	30220152
30220156	30220164	30220169		

■ 건 축 : 3명

30510001	30510002	30510007
----------	----------	----------

■ 항공 조종 : 5명 ※ 실기시험

31210001	31210002	31210004	31210005	31210006
----------	----------	----------	----------	----------

■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 (대저동)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43(대저1동)
- 강서구청 앞
 - (일반버스) 123, 125, 127, 128-1, 130, 307, 1004(급행)
 - (마을버스) 강서2, 강서5, 강서7-2, 강서11, 강서13, 강서15, 강서19
- 강서체육공원 앞
 - (도시철도) 3호선 체육공원역 하차 지하1층 연결통로쪽
 - (일반버스) 127, 128-1, 307, 1004(급행)
 - (마을버스) 강서2, 강서7-2, 강서11, 강서13, 강서15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u>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u>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u>전자식 측정기</u>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참고)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부산광역시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응시자 도핑테스트 검사 동의서
 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2018년 5월 일

위 본인은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시장 귀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 | |
|------------------|------------------|-----------------------|
| ▶ Buprenorphine | ▶ dextromoramide | ▶ diamorphine(heroin) |
| ▶ fentanyl 및 유도체 | ▶ hydromorphone | ▶ methadone |
| ▶ oxycodone | ▶ oxymorphone | ▶ pentazocine |
| ▶ pethidine | ▶ morphine | |

II. 금지방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치 료 목 적 사 용 면 책 신 청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 _____	2. 성 별 : 여 ☐ 남 ☐
3. 생년월일 : _____	4. 응시번호 : _____
5. 핸드 폰 : _____	6. 이 메 일 :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_____ 전공분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팩스 : _____ 이메일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 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